

광주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가단553917 판결 [사해행위취소]

##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국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4. 20.

## 주 문

1.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D(주민등록번호 2 생략), E(주민등록번호 3 생략), F(주민등록번호 4 생략), G(주민등록번호 5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2018. 4.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H은 2013. 12. 20. 원고에게 C에 대한 대여금 14,349,548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소295731호로 위 대여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4. 10. 21.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I은 2014. 11. 20. 원고에게 C에 대한 대여금 3,791,06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4647호로 위 대여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2. 16. 그 신청취지에 의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5. 4. 9. 확정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망 J은 2003. 8. 25. 사망하였다. 망 J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이 있고, 이들의 상속분은 각 1/6이다.

라. 피고는 2018. 4.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8. 25.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는 2018. 4. 30.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각 사실조회결과 및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 3. 판단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D, E, F, G이 2018. 4.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C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위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각 1/6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이루어진 일자인 2018. 4. 25.이 아닌 망 J의 사망일인 2003. 8. 25.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갑 제11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이서의 기재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망 J의 사망일인 2003. 8. 25. 이루어졌다면 그 무렵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을 것임에도 그로부터 무려 약 15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 피고가 어떠한 합리적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슬기

별지

1) 참고로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등기원인일이

2003. 8.25.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재는 상속재산분할협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경우 그 등기원인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기재하도록 한 등기예규(1982. 4. 13. 제정된 등기예규 제438호「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의 등기원인일자」및 2019. 6. 21. 제정된 등기예규 제1675호「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2의 나항)를 따른 것이므로, 위 등기원인일의 기재에 어떠한 추정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